#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57

발의연월일: 2020. 10. 29.

발 의 자:인재근・소병훈・허 영

송갑석 • 기동민 • 김원이

최혜영 · 최종윤 · 강선우

이해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취업제한 및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보육 및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이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 법률 제 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6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중 "원장"을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1조제4항 중 "「유아교육법」"을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유아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원장"을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7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 정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1700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1항제4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의 신고) ① (생 략)	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	
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	
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6
호의 <u>어린이집</u>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
	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	⑤
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	
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장과「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 지 ③ (생 략)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 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 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 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 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 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u>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u>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육아</u>
종합지원센터 • 시간제보육서비
스지정기관의 장, 「유아교육
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 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 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 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 고. 읍 · 면 사무소 또는 동(경 계를 같이 하는 읍 · 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 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 할구역에 출생신고 · 입양신고 ·전입신고가 된 아동·청소년 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구역에 설립 ·설치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법률 | 제2조의2에 따른 학

5
원장 및 육아종합지
<u>원센터 ·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u>
<u>기관의 장</u>

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 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 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으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 를 우편으로 송부반지 못한 자 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야 한다.

#### ⑥ ~ ⑨ (생 략)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

·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 ①

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 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 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 6. (생 략)
-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호의 어린이집

8. ~ 21. (생 략)

② ~ ⑦ (생 략)

법률 제1700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 6. (현행과 같음)
7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
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
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 21.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00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 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 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 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 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 검 ·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 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 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 항제7호의 <u>어린이집</u>,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 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 5. ~ 7. (생략)
- ②·③ (생 략)

일부개정법률
에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①
,
 1. ~ 3.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실금) 4
어린이집 · 육아종합
지원센터 · 시간제보육서비스
<u> 지정기관</u>
<u> </u>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